

【 12 】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총무과” 다음에 “자치정보과”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중 제7호를 삭제하며, “제8호 내지 제9호”를 “제7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도로교통과”를 “도로과”로 하고, “도로과” 다음에 “교통행정과”를 신설하며, 같은조 제2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제10조제3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2.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3.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4.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중 “문화체육담당관”을 “자치정보과장”으로 한다.
5. 「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1호중 “총무과장”을 “자치정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민간협력담당”을 “주민자치담당”으로 한다.
6. 「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을 “복지행정담당”으로 한다.
7. 「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중 “위생담당”을 “위생행정담당”으로 한다.
8.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중 “도로교통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